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번호	578
------	-----

2019. 4. 26.  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3월 29일, 서울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4.26.) 상정, 검토보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조인동 경제정책실장)

### 1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과학관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과학관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으로 함(안 제3조)
- 나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립과학관 관람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
- 다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정비 결과를 서울시립과학관 주소에 반영하고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관람료 할인을 규정하고 있음.

#### 나. 서울시립과학관 및 관람료 현황

-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'시립과학관')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개관했음.

#### 〈서울시립과학관 개요〉

- 위 치 :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
- 규모 : 부지면적 25,875㎡ / 건축연면적 12,330㎡ / 전시면적 3,700㎡
- 주요시설

층별	면적(㎡)	주요시설
지상 3층	1,528.09	상설전시실, 교육실
지상 2층	3,384.36	상설전시실, 사무실, 커뮤니티 스페이스
지상 1층	4,217.34	상설전시실, 메이커스튜디오, 강당, 교육실, 안내/매표소 등
지하 1층	3,201.02	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

- 조직 : 경제정책실 내 4급 사업소(정원 18명, 현원 16명)
- 예산 : 339억원(2019년 기준)
- 건립기간 : 2014. 1 ~ 2016. 12
- 총사업비 : 42,349백만원(국비 70%, 시비 30%)

- 개관 이래 2019년 3월말까지 누적 관람인원이 42만 7,827명이며, 관람수입의 총액은 약 2억 4,886만원임.

<연도별 시립과학관 관람인원과 관람료 수입>

연도	2017년 (5월부터)	2018년	2019년 (3월말까지)	합계
관람인원(명)	170,585	213,190	17,035	427,827
무료입장 인원(명)	54,295	33,719	6,849	94,863
관람수입(천원)	107,196	113,530	28,139	248,865

- 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)는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명예시민 등은 관람료를 면제 하고(제6조) 이외에는 관람료를 차별적으로 정하고 있음([별표]).

[별표] 관람료 (제5조 관련)

구 분	금 액		비 고
	개인	단체(20명 이상)	
어 른	2,000원	1,000원	20세~64세
청소년 및 어린이	1,000원	500원	7세~19세

#### 다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는 도로명 주소 정비 결과에 따라 과학관의 주소를 노원구 한글비석로 ‘168’에서 ‘160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, 조례와 실제 주소의 불일치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.

- 안 제6조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.
- 서울시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제로페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그 동안 결제처의 확보, 결제시스템의 편의성 제고, 소비자 이용 활성화 등에서 개선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제로페이의 이용자에게 서울시의 시설들에 대한 이용료, 사용료 등을 할인함으로써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립과학관 등 17개 시설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음.
  - 시설별로 수요 탄력성과 이용 요금을 고려해 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재정 지출 부담에 따라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한정하고 있음.

**<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개정조례안 제출 현황>**

연번	조례명	감면대상	감면율
1	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경기장 입장료, 체육시설 개인연습 사용료, 생활체육교실 수강료	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- 입장료: 30%, 사용료: 10%, 수강료: 5%
2	도시공원 조례	서울대공원 등 입장료, 공원시설 이용료	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- 입장료: 30%, 이용료: 10%
3	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	서울상상나라 입장료	3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4	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	시립과학관 관람료	3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5	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	시민청 시설 대관료	3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6	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	교통문화교육원, 교양취미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이용료	1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7	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	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	1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
8	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	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형제작 비용	1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9	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	1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10	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	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	1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11	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	한강공원 내 유람선, 체육·휴양 시설 등 이용료	1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12	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,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 등 강습료	1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13	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	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당, 교실 등 사용료	5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14	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장수 조례	인재개발원 내 강의·체육시설 사용료	5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15	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	회의실, 강당 등 사용료	5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16	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	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및 서울 영어마을 수유·관악캠프 이용료	5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17	장사 등에 관한 조례	시립장사시설(화장시설, 봉안당, 자연장지) 사용료	5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

- 그러나, 서울시가 직영 또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시립 시설의 특성상,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한 제로페이와의 연관성이 약하고 오히려 목표와 정책적 수단 간의 대치(displacement of goals)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.
- 또한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감면대상자와 달리 시정 추진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립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행정적·입법적으로 적절한 추진 방식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.
- 시립과학관의 경우 최고 관람료가 2,000원으로 최대 30%를 감면 하여도 실제 감면액이 600원에 불과해 정책적 취지와는 달리 시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 기대한 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- 아울러, 개정안의 비용추계에서는 시립과학관 전체 이용자 중 30%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, 현재 저조한 제로페이 사용율과 미흡한 할인 혜택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매우 부족함.
- 이 밖에도 개정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% 이내에서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관람료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람료에 대한 자의성과 불명확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# 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과학관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과학관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으로 함(안 제3조)
- 나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립과학관 관람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
- 다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
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#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168”을 “160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관람료 면제)”를 “(관람료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명칭 및 위치) 서울특별시립 과학관(이하 "과학관"이라 한다)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립과학관"이라 하고,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<u>168</u>(하계동)에 둔다.</p> <p>제6조(<u>관람료 면제</u>)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명칭 및 위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160</u>----- -.</p> <p>제6조(<u>관람료 감면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제로페이 결제시 관람료 감면에 따라 약 10,604천원 비용 발생

※ 산출근거 : '18년 입장수입(117,823천원×30%(제로페이 이용률 추정)×30%(감면율) = 10,604천원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
#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한 유 리 (02-2133-5253)